

제3062호
2024. 2. 14.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15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
개혁위원회 및 윤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토박이의 정의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선정방법 (안 제4조)
- 토박이 인증대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안 제5조)
-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 02-3396-4572, 팩스 : 02-3396-8612, email : rosekw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158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 공 고

제2024-161호 :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무원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원 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illegible]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지킨 토박이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박이의 정의) “서울 중구 토박이”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6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정방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60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서울 중구 토박이(이하 “토박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제5조(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토박이증을 발급한다.

② 토박이 인증패와 토박이증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토박이증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박이증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
3. 종량제봉투 제공

③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④ 토박이는 제2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교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이 토박이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서(세목별과 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 제 증명)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

제3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구원이 1명인 가구 및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